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76호

2019. 12. 4.

건명	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공공시설사업소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11. 15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11. 15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반환기준 및 사용료를 완화하여 시민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“공설 운동장” 용어를 “시민 운동장” 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용어정비에 따른 별지 용어정비 [별지 제1호서식~별지 제5호서식]
- 다.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수정(안 제11조제1항, 제2항 )
- 라.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반환기준 완화 (안 제11조제1항제1호)
- 마.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장 전용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비(별표 1. ~ 별표 2.)

바. 환불요청에 대한 규정 조문 및 별지추가 (안 제11조제3항)〔별지 제6호서식〕

## □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